

근로자와

건강진단



한국노총위원장

김 동 인

1. 문제의 접근

이 글은 산업재해나 직업병 문제를 산업의 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이것은 산업의 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노동문제가 아니라 노동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도 올바르게 이뤄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점에 비추어 산업의학도 그것이 산업보건을 취급하는 이상 노동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선상에서 진전될 것을 요구받는다. 그렇지 못하다면 산업의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대상과는 유리된 채 실천과학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최근 정부나 기업주, 언론 등에서 보이고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나 관심의 방향에 대해서이다. 누구나 산재나 직업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대책은 이 이상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산재의 피해는 83년 7월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사실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당사자는 다름아닌 근로자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되거나 없어지게 될

때 비로소 산업재해예방활동은 그 의의가 주어지는 것이다.

2. 산업보건과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진단 제도와 실태를 통해 산업보건상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로 하겠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고 있는 건강진단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업병을 조기발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자는 데 있다. 바로 이러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즉 이는 일정의 계약 하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때 위생적이고 무해한 작업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작업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보건상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보건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근로자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진단실태를 보면 이러한 취지는 무색할 정도이며 오히려 현행 건진제도가 직업병을 온존·조장시키고 있다는 의문마저 제기케 한다. 드러나고 있는 건강진단 실태상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기업주의 형식적인 건강진단실시와 건강진단 실시의 회피, 기업주의 건강진단 항목의 제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건진을 실시하거나 아예 건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예로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총 250만명중 약 19만명만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 특수건강진단대상 근로자수가 해가 바뀌어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음.

②정밀검사시기와 전문적인 건강진단종사자의 태부족으로 인한 건강진단의 형식화

③집단건강진단시 부정도 건강진단제도에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음. 건강진단비의 덤핑이나 진단근로자수 늘려주기, 이상(異常)이 발견된 경우 숨겨주기 등

④기업주의 건강진단제도의 악용, 건강진단결과를 본인에게 통고해주지 않고 결과를 악용하여 해고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⑤건강진단후의 문제로써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질병으로 처리되고 있는 신경계통이나 순환기계통, 위장병, 눈병, 폐결핵 등의 질병문제. 이들 질병은 분명히 작업에서 기인하는 질병이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

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⑥근로자개인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점.

이상과 같은 건강진단제도와 실태상의 문제점이 특히 작년도 부천기계에서 있었던 근로자 3명의 의문의 죽음이나 반월공단내의 회사에서 있었다.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납중독사태 등에서 잘 나타났다고 보인다. 이들 사건은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의해 파악되지 못하다가 해당 근로자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비로소 사회에 알려진 것들이며 부천기계의 경우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

3. 대책방향

물론 건강진단제도 하나만 가지고서 산업보전이 확보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주제가 건강진단제도인 만큼 이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책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정부는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범시행의 감독이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며 범위반시 제재를 법대로 가하여야 하고

경미한 벌칙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보았던 법제도상의 미비점은 법을 개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적으로 확대·보장해야 하며 기업주의 건강진단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장단위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고, 전국적으로는 정부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는 노사 및 학계가 참여하는 민간안전보건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결 어

지금까지 건강진단제도에 한정해서 살펴 보았지만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중요한 노동문제의 하나이며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분리해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보건안전대책은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건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되고 추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동안 임금과 노동시간이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요구로써 제시되어 왔듯이 머지않아 산업

재해나 직업병문제도 근로자들의 공동의 요구로서 집단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술한 생명이 사라져갔고 수많은

근로자들의 건강이 파괴되었다.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일을 시키는 기업주에게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강력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大韓産業保健協會執行部署擴張改編

大韓産業保健協會는 各種 目的事業의 能率向上과 分野別 專門化等 諸般 業務의 活性化를 圖謀하기 爲하여 中進의 執行部署 事務局 (1局 4課) 體制를 2局 (管理局, 事務局) 6課 (企劃調查課, 總務課, 經理課와 教育訓練課, 健康管理課, 産業衛生課) 로 擴張 改編하였으며 앞으로 當協會의 內實있는 發展이 期待된다.

機 構 表

